

집합투자재산 평가규정

제 정 : 2017.1.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8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적정가치를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과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구성 및 운영

제3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설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준법감시인
2. 위원 : 운용본부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자,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부서가 평가위원회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된다.

제5조(회의소집)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사장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이외의 자의 출석) 위원장은 중요사안의 심의·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위원 이외의 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 ①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보고 등) 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 주관부서장은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경과 요지와 심의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관부서에 비치·보관한다.

제11조(비공개 및 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하며 회의참석자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12조(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기본원칙) 집합투자재산은 법 23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장부가격"이라 한다)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공정가액 평가) 제12조에서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회계법인
 - 다. 신용평가업자
 - 라. 감정평가업자
 -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제14조(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

- ① 채무증권 등의 평가를 위하여 선정하는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일 것
 2. 채권 등의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이를 기초로 투자재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격평가체계,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 등을 적절히 구비하고 있을 것
- ② 주관 부서장은 선정된 채권평가회사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채권평가회사를 교체하거나 선정채권평가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채권평가회사 제공 가격 적용) ①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정보를 기초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평가회사의 가격정보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가격 적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채권평가회사 제공가격의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

제1절 주식 등의 평가

제16조(상장주식의 평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이하 "등록주식"이라 한다)은 평가 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249조의12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7조(권리락 등이 된 상장주식의 평가) 무상 또는 유상권리락이 된 권리신주와 배당락이 된 배당신주의 평가는 평가일에 구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18조(시가형성 전의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시가형성전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구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식과 구주식의 배당기산일이 같지 않는 경우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③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는 그 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비상장 및 비등록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배당수익의 처리기준) ① 배당락일에 인식할 배당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과거 배당금 수준,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등에 나타난 손익현황을 감안하여 추정한 배당수익(이하 "예상배당처리"라 한다)을 기준으로 배당락일에 처리하고 추정배당수익과 확정배당수익의 차액은 배당에 대한 공시반영일에 조정 처리한다.

② 배당수익의 확정일은 "배당과 관련된 이사회결의사항", "공정공시"와 "주주총회결과"가 있는 날을 말하며 증권시장 공시일을 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채권의 평가

제21조(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한다)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절 파생상품 등의 평가

제23조(파생결합증권) ①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24조(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 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5조(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당해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제4절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26조(외화표시증권평가기준) ①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외화표시증권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시간 19시를 기준으로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한다.

③2항의 외화표시증권 매매체결내역 입수와 관련된 데이터 등은 1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적용환율)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 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외화표시 상장주식) 외화표시 상장주식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29조(외화표시 상장채무증권) 외화표시 상장채권은 당해 채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종시가에 경과이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시가에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제30조(외국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31조(비상장 외화표시증권) 비상장 외화표시증권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5절 기타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2조(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CD) 등) 기업어음 또는 CD 등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33조(부동산) 부동산은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34조(실물자산) 실물자산의 평가는 당해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제35조(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투자재산) 본 장에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6조(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37조(매각 제한 투자재산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제16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2.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3.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재산
4. 기타 제16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제6절 평가의 특례

제38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평가) ①제12조 단서규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장부가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장부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조정평가)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투자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 할 수 있다.

제7절 평가관리 등

제40조(평가관리)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본부 이외의 부서에서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오류의 수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고객의 이익이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5장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42조(부도채권 등의 평가)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부도채권 등의 분류 :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 등은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부실우려단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 등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가. 이자1회 연체

나. 1월 이상 조업중단

다. 최근 3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2. 발생단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 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가.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라.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 이라한다)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바. 기타 당해 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 개선단계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된 증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 등을 개선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 가.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원인의 해소
 - 나.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해소
 - 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 라.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사적 회생절차개시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약정 체결 포함)
 - 마. 기타 당해 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4. 악화단계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된 증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 등을 악화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 가. 상법 등에 의한 청산절차의 개시
 -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
 - 다. 주채권은행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리절차의 중단결정(사적화의 중단,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부결 또는 약정 미체결 포함)
 - 라. 기타 당해 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 ②부도채권 등의 평가 : 부도채권 등의 평가는 분류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부실우려단계
 - 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 나. 채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는 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
 2. 발생단계
 - 가. 원금 :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제1항제2호마목"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처리 한다. 다만, 부도채권 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 ("제1항제2호마목"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함
 - 나. 이자 : 분류일을 기준으로 기발생이자를 상각처리하고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계상은 중지한다.
 3. 개선단계 :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금융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가. 이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부실우려단계 및 발생단계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나. 이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부실우려단계 및 발생단계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 처리한다.

4. 악화단계 :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악화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도채권 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기타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이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부실우려단계 및 발생단계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나. 이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부실우려단계 및 발생단계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 처리한다.

③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다만, 2001. 9. 1. 이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집합투자기구 해지시 미수금 등의 평가

제43조(미수금 등의 이체)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로 인한 해지금 지급시 현금화 되지 않은 미수금 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해지일에 그 미수금 등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1. 미수배당금의 처리가액 : 해지일부터 배당금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배당금지급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산일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을 배당금 지급일로 본다. 단, 주총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총예정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배당금 지급일로 본다.
2. 원천징수환급청구권 처리가액 : 해지금 지급 당일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급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월의 익익월 10일을 환급일로 한다.
3. 기타 미결제 수도대금 등 처리가액 : 해지일부터 수도대금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미지급금 등의 이체)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로 인한 해지금 지급시 지급기일 미경과로 인한 미지급금은 해지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해지일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이 확정된 경우로서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45조(이자율의 적용) ①제43조 및 제44조의 공정가액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이자율 적용하여야 한다.
- ②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수령당일 및 지급당일의 은대이율로 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신탁업자가 우선 충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자율과 예상회수일 등을 신탁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6조(신주인수권의 처리)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금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한다.

제47조(미상장주식의 처리)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로 인한 미상장주식의 처리는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한다.

제7장 보칙

제48조(신탁업자의 확인) 이 규정은 법238조제3항에 의거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자산의 평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